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가합1006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장호진, 선수지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장지영

변론 종결2023. 4. 19.

판결 선고2023. 5.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 및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8. 12. 19.

체결된,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및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8. 12. 28.

체결된,

다.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 및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20. 12. 16.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강서구청 2018. 12. 19. 접수 제025445호로 마친,

-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강서구청 2018. 12. 28. 접수 제036301호로 마친,
다.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초구청 2020. 12. 16. 접수 제02697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자동차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0. 26. 설립된 법인이다. D은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C은 2018. 10. 24. C이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C의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을 신설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원고가 신설 회사의 주식 70%를 인수하기로 하는 거래를 하고자, C이 신설 회사의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고, 원고가 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며, 위 대여금을 포함한 18억 원을 신설 회사의 주식 매수자금으로, 2억 원을 신주 인수자금으로 하되, 신설 회사에 대한 방송 인·허가 등 C의 신설 회사 설립 후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 이전이 완료되면 원고가 신설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에 1주를 더한 주식을 이전받고, 위 사업이전완료시부터 3개월 내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최종 계약은 사업이전완료 시점에 조건이 확정된 날 이후 체결하고, 만약 신설

회사가 본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본 양해각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8. 10. 24. 이 사건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C이 그 담보로 C 총 발행주식 50%에 1주를 더한 주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채무자 C(이하 '을'이라 한다), 연대보증인 D(이하 '병'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을 위한 신설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의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입금)

1. 총 차입금액: 10억 원
2. 차입기간: 2018. 10. 24.부터 2019. 1. 29.까지
3. 지급방법: 갑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을이 지정하는 통장계좌로 현금 이체한다.
 - 1) 2018. 10. 24. 3억 원
 - 2) 2018. 10. 29. 7억 원

제3조(차입금 반환)

1. 을은 2019. 1. 29. 원금 10억 원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2. 원금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을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반환일 이전에 2018. 10. 24. 갑과 을 간에 이루어진 양해각서에 따라 을의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을 위한 신설 법인이 설립되어 갑과 을 간에 신설 법인의 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차입금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차입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제4조(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2. 병은 을의 최대주주로서 차입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담보로써 다음을 제공한다.

1) 을의 총발행주식의 50%에 상응하는 주수 + 1주

2) 위의 주식 담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한다.

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8. 10. 24. 3억 원, 2018. 10. 29. 7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C은 2018. 10. 26.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였다(보통주 100,000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자본금 5억 원).

마. C은 2018. 12. 19.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제1방송차량'이라 한다) 및 제1방송차량 내 방송장비인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에서 제1방송차량과 함께 칭할 때에는 '제1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방송차량에 관하여 강서구청 2018. 12. 19. 접수 제025445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제1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인도하였다.

바. C은 2018. 12. 28.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이하 '제2방송차량'이라 한다) 및 제2방송차량 내 방송장비인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에서 제2방송차량과 함께 칭할 때에는 '제2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방송차량에 관하여 강서구청 2018. 12. 28. 접수 제036301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제2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인도하였다. 1) 사. C은

2020. 12. 16.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이하 '제3방송차량'이라 한다) 및 제3방송차량 내 방송장비인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에서 제3방송차량과 함께 칭할 때에는 '제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제3방송차량에 관하여 서초구청 2020. 12. 16. 접수 제026976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이하 '제3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제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C에게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2)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 3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제1, 2, 3방송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인도하였는바, 제1, 2, 3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기하여 제1, 2, 3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제1, 2, 3소유권이전등록은 말소되어야 하며,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는 인도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 종속된 조건부 계약으로서, C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 이전을 완료하지 못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원리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 C의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의 매도 당시 원고의 대여원리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제1, 2, 3매매계약은 C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C과 피고는 제1, 2, 3매매계약으로써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 또는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대여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한 2018. 10. 29.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용인인 C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제1, 2, 3매매계약은 위 대여금반환채권의 발생 이후에 각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0억 원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30.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C이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사업인허가 등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 이전이 완료되고 원고와 C 사이에 피고의 지분인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대여금을

지분인수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조건이 아니라 변제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인정과 달리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피고의 설립, 방송사업 및 뉴스사업 이전, 지분인수계약 등이 무산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더하여,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 2, 3매매계약 무렵 C의 재산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인정된다.

적극 재산	예금 IBK 기업 은행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0	127,360,072	0	①
(계좌번 호 2 생략)	4,1 65, 102	4,165,102	174	②		
(계좌번 호 3 생략)	136 2) 미화 0.1 2달 러 × 기준 환율 (20 18. 12. 19.) 1,1 29. 90 원	1353) 미화 0.12달러 × 기준환율(2018.12.28.) 1,121.30원	1314) 미화 0.12달러 × 기준환율(2020.12.1 6.) 1,093.20원	③		
(계좌번 호 4 생략)	6,5 00, 000	6,500,000	0	④		
(계좌번	0	0	2,027,500	⑤		

적극 재산	예금 IBK 기업 은행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0	127,360,072	0	①
호 5 생략)						
유체 동산	제1 방송 차량 및 방송 장비 제2 방송 차량 및 방송 장비 5) 제1 매매 계약 체결 시점 에도 201 8. 12. 28. 기준 감정 가와 동일 한 가액 으로 추인 함제 3방 송차 량 및 방송 장비 6) 제1, 2매 매계 약 체결 시점 에도 202 0. 12. 16. 기준 감정 가와 동일 한 가액	130,121,000527,854,00019,749 ,000	0527,854,00019,749 ,000	0019,749,00 0	⑥⑦⑧	

적극 재산	예금 IBK 기업 은행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0	127,360,072	0	①
	으로 추인 함					
합계	688 ,38 9,2 38	685,628,309	21,776,805	⑨		
소극 재산	대여 금IB K 기 업은 행 대출	원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	1,000,000,000	1,000,000,00 0	1,000,000,00 0	⑩
(계좌번 호 1 생략)	101 ,53 9,1 60	0	32,313,685			
(계좌번 호 6 생략)	100 ,00 0,0 00	100,000,000	0			
(계좌번 호 7 생략)	300 ,00 0,0 00	300,000,000	300,000,000			
(계좌번 호 8 생략)	200 ,00 0,0 00	200,000,000	190,000,000			
(계좌번 호 9 생략)	200 ,00 0,0 00	200,000,000	200,000,000			
(계좌번 호 10 생략)	70, 000 ,00 0	70,000,000	70,000,000			
(계좌번 호 11 생략)	200 ,00 0,0 00	200,000,000	200,000,000			
(계좌번 호 12 생략)	62, 000 ,00 0	62,000,000	62,000,000			
(계좌번 호 13 생략)	0	0	400,000,000			

적극 재산	예금 IBK 기업 은행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0	127,360,072	0	①
합계	2,233,539,160	2,132,000,000	2,454,313,685	⑪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매매계약 무렵 C의 적극재산 가액은 688,389,238원 상당, 소극재산 가액은 2,233,539,160원 상당, 제2매매계약 무렵 C의 적극재산 가액은 685,628,309원 상당, 소극재산 가액은 2,132,000,000원 상당, 제3매매계약 무렵 C의 적극재산 가액은 21,776,805원 상당, 소극재산 가액은 2,454,313,685원 상당으로, 유체동산의 감가상각 및 C이 2023. 3. 3. 인천지방법원 2022카명107731 재산명시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가격 미상의 자동차 2대, 평가액 합계 5,140,000원의 유체동산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제1, 2, 3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등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2)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 3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제1, 2, 3매매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는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 외에 비교적 소액이 예금된 예금채권이 있었을 뿐이어서,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제외하면 공동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제1, 2, 3매매계약 체결 무렵 약 21억 원 내지 24억 5,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C의 중요한 영업재산인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자신의 자금으로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한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C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뿐 아니라 향후 영업을 통한 변제자력의 회복도 어려워지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제1, 2, 3매매계약의 체결로써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3) 제1, 2, 3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인 C이 설립한 회사이자 C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피고 역시 제1, 2, 3매매계약의 체결로써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선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원상회복 의무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1, 2, 3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제1, 2, 3소유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제1, 2, 3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주채광

판사홍사빈

판사김현정

별지

1) 피고는 제1, 2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명시적이지는 아니하나 제1, 2매매계약 체결일이 2018. 10. 29.이라고 주장하는 듯 보인다(피고의 2023. 1. 10.자 준비서면 2~3면, 을 제9호증). 그러나 을 제9호증은, ① 제1, 2방송차량 및 방송장비의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선금 2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2018. 10. 29., 2018. 10. 30.에 각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장 적은 금액인 잔금 5,000만 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8. 12. 19.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에 있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제1방송차량, 제2방송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공급일이 2018. 11. 22. 이어서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불일치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부합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제1, 2매매계약은 위와 같이 제1, 2방송차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이 접수된 날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미화 0.12달러 × 기준환율(2018.12.19.) 1,129.90원

3) 미화 0.12달러 × 기준환율(2018.12.28.) 1,121.30원

4) 미화 0.12달러 × 기준환율(2020.12.16.) 1,093.20원

5) 제1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도 2018. 12. 28. 기준 감정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추인함

6) 제1, 2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도 2020. 12. 16. 기준 감정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추인함